

고성군민상 조례증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심사보고서

1997. 11.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1. 22 고성군 수
나. 회부 일자 : 1997. 11. 26
다. 상정·의결 일자 : 1997. 11. 26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고성군민상 조례증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심의위원중 소속 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던것을 개정안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민상 시상대상자를 심의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폭넓은 대상자를 발굴 추천 및 시상키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방법은
● 답 : 분야별 심의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 문 : 2인이상이면 2/3이상 득하지 못하거나 전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 답 : 1차 본과별 토론을 거친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 없었지만 앞으로 검토하겠음.
- 문 : 이해관계인 측정이 애매 모호하고, 제척범위는
- 답 : 위원회 임기는 1년이므로 수시로 조정가능.

5. 토 론

- 안 제8조제4항 중 "해당위원은" 다음에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키로 함.

6. 심사결과

- 1997. 11.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 제8조제4항 중 "해당위원은" 다음에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기로 하고 원안가결